2011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종합토론

○ **김후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SNS 이용자의 책임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관련한 별도 규제 법규가 필요한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의 처벌과 관련,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 자체가 위헌이라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다거나, 남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아직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2010년 기준 12,372건에 달합니다. 동일 연도에 횡령 건수가 약 22,000건, 도박이 13,000건 정도임을 비교해본다면 명예훼손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사이버명예훼손은 2010년에 약 3,090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아직은 명예훼손 자체를 비범죄화하여 민사적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용도로 고소를 남발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고소 남발을 사전에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고소하면 검찰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사 정치적인 의도의 고소라고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이 배당되면 언론은 '수사 착수', '본격 수사'라고 보도하고, 마치 검찰이 고소인의 악의적인 의도에 편승하여 정치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세간에 비춰지곤 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언론에서도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한다'는 표현보다는 '사건이 배당되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등의 순화된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계를 보면 40대 이상이 명예훼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이버상 인격권 침해 범죄의 경우에는 2,30대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2,30대의 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일반 회사원의 순으로, 법을 가장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현실의 법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는 언론사와 다르게 검증 체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현행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고 있으며, 정당성과 진실성이 없으면 처벌하는 것이 우리의 법리입니다. 이용자들이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 나름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공공의 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개인이 글을 올리는 시점에서 이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공공의 이익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기준이 아주 추상적이기 때문에 SNS 이용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 법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를 위한 조직 개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듯이, 새로운 규제에 대한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본질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 현실을 따르고 준수하는 인터넷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별도의 법리가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으며, 일반 명예훼손 등의 법리로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파성, 회복불가능성 등 인터넷의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양형 구형할 때,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등 처벌 강도에 있어 참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규제 제도를 만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존 법리를 적용하되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지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SNS 이용자 스스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올리는 게시물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포털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판례나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이용자들과 포털사 등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형성되면 나중에 법원의 판단이나 검찰

의 유무죄 판단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

여러 종류의 SNS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SNS가 사업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 참여를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 가능, 그 과정에서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유하는 정보가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갖게 되면서 점점 미디어적 속성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SNS가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강화, 수행해나가면서 기존 미디어와 보완적인 관계도 되면서 동시에 경쟁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1인 미디어로서의 SNS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는 기성 언론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운대에서 불길이 타고 있는 것을 '위키뉴스'라는 SNS가 먼저 퍼뜨리고, 그 후 기존 언론들이 받아서 보도한 사례가 있으며, 올 여름 수해 때도 일반인에게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선거에서도 선거율을 높이는 등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반면 SNS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위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적 가치, 또는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적인 법익, 즉 명예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의 허위정보 유통이 문제가 되는가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헌판결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명백히 현존하고, 즉시 차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외쳐서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가다가 밟혀죽는 상황 등, 명백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대부분 집단지성에 의해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허위임이 명백할수록 그 사실이 허위라고 밝혀지는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문제는 허위인지 애매

한 것들이 유통되는 경우인데 그 문제가 생긴 동일 공간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소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빠른 시간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SNS로 인해 더 늘어난다는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SNS 상의 게시물도 기존의 게시물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직접 소명하지 않는다면, 그 작성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면서 반대로 피해도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매개자인 사업자들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임시조치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표현에 대한 SNS를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명백한 불법적, 탈법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소명하면 사업자들이 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2009년 4월의 판결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 그 매개자인 사업자가 사전에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의 판결처럼 보일 여지가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첫째, 명예훼손임이 명백해야 하고 둘째, 사업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셋째,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통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조치해야 한다는 판결이므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사자의 소명이 있었을 때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공적 심의기관이나 규제 기구의 판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SNS의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이른바 파워네트워커, 온라인유력자는 이전의 오피니언리더보다 훨씬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피니언리더이면서 때로는 언론인의 역할, 때로는 정보의 유통까지도 담당합니다. SNS의 미디어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워네트워커나 온라인유력자의 의미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용석 교수님께서 파워네트워커로 꼽으신 이외수 선생님의 경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영향력 지수라는 것은 질적 영향력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로워가 굉장히 많은 이외수 선생님의 경우, 팔로우는 하지만 정치적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짧은 시 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파워네트워커나 온라인유력자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원철 판사님의 발제문과 관련하여, 인격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격권의 주요 구성요소인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주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소극적 프라이버시권이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으로 변화하면서 자기정보통제권이 굉장히 수용되는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 부분이 정보 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NEIS 등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서 나왔던 개념인데 반해, 현행의 SNS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입니다. SNS의 정보는 개인 스스로 제공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아노출하면서 만들어낸 정보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자기정보통제권을 인정해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본인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본인의 책임이나 권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링크 등으로 불법정보를 올렸을 경우 판례에서 '직접 게시와 다를 바 없는 사실의 적시'라고 본 근거로서 '올리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음란하고 불법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SNS에서는 약간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트위터에 트윗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의 담벼락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원래 글을 올리는 성향이 그런 쪽과 관계가 먼데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링크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

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로, 사적 정보와 공적정보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 최악의 불법정보는 나치 찬양, 인종차별 등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불법정보라면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고, 온라인 상에서 그러한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불법 정보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SNS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만큼 강력한 것이 없으며, 별도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기술의 속성상 다양한 우회 수단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 **황유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저널리즘, 언론의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학 분야에서 SNS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입니다. 그 동안에는 SNS로 인한 시민참여 등의 가능성이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용자들, 정치 관계자들이 SNS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분석해보면 SNS를 신속성, 시민들의 동원력 측면에서 부각시키고 있으나, 실제 살펴보면 의제를 설정하고 역의제가 설정되는 일련의 과정은 기존 언론의 보도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기성 언론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SNS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고, 그러다보니 대중이 집중하고, 언론이 다시 집중하고, 그러자 정치사회의 유력자가 관심을 갖고, 그러다보니 다시 SNS가 부각되는 순환구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전통미디어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싶고, 언론의 보도가 없이 SNS 상의 공동 이슈나 여론 등이 사회적 의제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SNS에서 자신을 노출하는 것은 사회나 대인에 대한 신뢰감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 정보의 노출이 궁극적으로 인맥이나 정보 등을 자신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 사회자본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자본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지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활동적인 SNS 이용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적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능동적인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접근이 어렵거나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지가 없어서, 하기 싫어서 안하는 집단도 많이 있습니다. SNS에 모든 논의가 집중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다발적인 비이용자들이 소외되어 양분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소셜뉴스라는 것이 집단 지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흔히 간과하는 것이 책임의 결여입니다. 책임이 없으면 성숙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SNS를 연계하여 보도에 이용하고 있는데, SNS는 전략적 측면에서 혁신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언론은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이고 SNS는 시민저널리즘이라는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 언론인 모두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SNS가 발전적인 시스템이기는 하나 저널리즘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으로 볼 수 있을지, SNS에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엄 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저는 주로 인터넷상 불법정보, 유해정보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이버상에서의 불법 정보의 유형과 그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각종 의무, 즉 본인확인 의무라든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 게시글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사이버상의 피해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그 파급력과 전파성, 지속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서비스인 SNS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점은 SNS가 과연 사적 공간인지, 아니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트위터에서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하면 금세 퍼져나가고, 또한 다양한 매체, 포털 등에서 특정인의 트윗을 게시하거나 노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NS가 반드시 특정인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는 사적인 공간은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되는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관련 조직 개편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수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에 대해 기존의 인터넷과 동일하게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법적 규제보다는 SNS의 자정 능력, 자율규제, 그리고 온라인의 평판시스템 등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소셜영향력자들에 대한 새로운 허위정보, 유해정보의 진위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할 것이며, 자율적 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며, 법적 규제는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정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변호사)**

최근 현직 판사가 SNS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 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현직 법관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직 판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함석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법 부장판사)**

엄열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나 규제를 논해왔었는데, 시대가 흐르다보니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고, 포털을 언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 새로운 쟁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목이나 표현 등을 수정하는 등 편집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므로 상당 부분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SNS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SNS를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언론매체로 볼 수 있을지, 그러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교통상부 직원**

최근에 국회에서 있었던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야권에서 많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에서 한미 FTA에 관한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김후곤 토론자, 조원철 발제자님께 법적인 제재 조건, 또는 사후적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황용석 (발제자,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김유향 박사님의 질문 중, 온라인유력자가 전통적인 의미의 여론지도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연구에서는 여론지도자의 접촉 범위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 당시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물리적, 공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지금의 SNS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친목회, 동창회 등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유력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대중의 주목을 끄는 힘'을 어떻게 갖고 오는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끌게 하는 매력적인 변수들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여러 속성을 가지고 주목을 끄는 힘의 범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팔로워 수와 구독하는 사람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메시지가 확산되는 속도 등을 망라하여 온라인 유력자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는 50년대의 카츠모델과는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현주 교수님 연구를 보면 메시지의 품질이 온라인의 여론지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대중성만 가지고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평판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황유선 박사님의 질문과 관련, SNS가 저널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수용되는 상황에서 군중이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SNS 상의 쟁점은 그것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아들여졌을 때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SNS의 많은 부분은 언론보도에 약 70%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자료

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보니 거꾸로 SNS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셜뉴스는 편집 정책이 굉장히 명확하며, 좋은 컨텐츠로 품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중의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쓰고 이것이 확산되도록 하는 저널리즘적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저널리즘의 루트 없이 단순히 대중들과의 관계망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경우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진실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최소 규제에 대해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SNS의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쟁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를 행정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해당 기관이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위원 선임도 대통령이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민간기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국가가 직접 심의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부가 직접 인터넷을 심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아동포르노그래피 등의 제한에 국한되어 행정적 효력을 갖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 여부 등을 판단해서 게시물 삭제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구의 성격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법학계에서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엄 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행정처분으로 확정된 바는 없으며, 이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 조원철 (발제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물론 자율 규제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선의 기능이며, 사법적인 구제는 가장 후방에 있는 것으로, 가장 적은 수의 사건만 사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구제가 의미 있는 것은 일선에 있는 사안들의 방향을 좌우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역할 때문입니다. 개인적

으로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SNS의 자율적인 기능에만 맡기기에는 조금 회의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중대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SNS의 긍정적인 역할이 돋보이는데 반해,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정책을 정하고 현실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현실을 반영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자기 모습을 변신해나가는가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법적 이슈를 종전의 법 논리로만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정역할도 좋지만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조치 등이 사실은 사법적인 판단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고 생각하며, 포털과 SNS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통일적인 지향점을 잡아나가야 사법부도 그 부분을 참고하게 되고, 그렇게 규제 아닌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심의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2차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SNS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특성, 즉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의 가치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그동안 올렸던 단편적 정보들을 누군가가 모으고 각색, 왜곡하여 다시 SNS에 올려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리 처음에 그 정보를 올린 것이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으로서 위법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법리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SNS에서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 개인적으로 형사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사인 간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규제 아닌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공적 이슈에 관한 사안일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전혀 공익성이 없는 일방적 비방이 아닌 한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SNS의 별도 규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므로 계속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 가운데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보게시자의 절차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직판사 문제와 관련, 사용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안에 대해 대법원이 검토중입니다. 기본적으로 SNS나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이전의 환경에서도 판사의 정치적 견해가 아예 없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언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나,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발언이 굉장히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널리 퍼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사적, 정치적 견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이드라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이므로 법적 강제성은 없을 것이고, 공감대 없는 대법원만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절차를 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비합리적인 유언비어에 대한 법적 제제를 여쭈어보셨는데, 형사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며, 더 나아가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조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또는 그런 정보의 차단,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것인데 그런 이슈의 특성상 개인적인 피해자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적 접근방법도 유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엄 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형사적 접근은 매우 조심스러워야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다만 우리 사회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놓고, ‘위헌이므로 통신의 자유가 인정된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그 구성요건이 굉장히 추상적이므로 일반인을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 된 것이므로,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정 안보나 국방, 외교, 통일, 국민경제, 테러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된다면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안이 중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처

벌규정이 있으므로 형사 처벌의 길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공직자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로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NS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통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정명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사이버 공간에서 온갖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유통되고 있는데, 자정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규제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신 규제적 측면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있는 것인지, 또는 검토 중인지 궁금합니다.

○ 엄 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장)

그러한 게시물을 사전에 임의대로 판단해서 삭제나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도 난 바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게시물에 대한 차단 등의 조치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 차단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의선 (사회자, 서울제7중재부 중재위원)

사회자로서 간단히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음란물 등 위법적인 표현물,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고의성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많은 법률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면서 해결해나갈 문제라고 봅니다.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번 발제와 토론을 통해 SNS에 대한 풍부하고 상세한 내용을 언급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토론에 나서주신 분들도 매우 예리하게 문제를 분석,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자께서 시간을 엄수하여 토론을 원활히 진행해주셔서 토

론회가 예정대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 세간의 견해는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시각,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니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종의 쓰나미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SNS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특히 선거 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보면서 '정보혁명'이란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쓰나미인지, 아니면 잠깐 불어닥친 소나기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룻배가 손님을 많이 싣고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승객들이 왼쪽, 오른쪽으로 우왕좌왕하면 가라앉을 위험이 큽니다. 그럴 때는 선장이 지시에 따라야 무사히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쓰나미인지, 한 때의 소나기인지 모를 사태가 있을 때 정치지도자들이나 언론의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부화뇌동하여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SNS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런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보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신중하고 책임성 있게 SN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자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자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은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도덕을 내세워 비호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약점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도덕은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니 무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무기로 사용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덕에 의한 공격이 계속 순환되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사회가 파멸하

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중국에 강남의 귤은 맛있고 단물이 많은데, 강북으로 옮겨가면 탱자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개인의 도덕성만을 믿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으며, 그 불완전한 틈새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의 힘을 빌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심각히 침해되는 등의 사안은 새로운 법률체계를 만들어야만 규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된다면 특별법의 형태가 될 텐데, 대부분은 행정적인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규제보다는 사법적 규제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존의 법체계를 제대로 활용해서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법에 따라 규제할 경우에는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선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공익이 면책사유로서 반드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면책사유로서의 공익 또한 엄격히 제한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살펴보면 공익이란 주로 권력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적용할 우려가 대단히 많으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직 판사의 SNS 사용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과 사법, 행정 3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이 재판하는 사건에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결론을 좌우해선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판사가 정치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하는 등의 경우도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해당 법관이 재판할 다른 사건에 대해 예단을 주는 것이며, 그러한 예단을 허용한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상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그 판사의 판결에 대한 예단을 허용하게 되고, 그 결과로 신뢰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대원칙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이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지하게 발제 및 토론에 임해주셔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중요한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언론의 범위에 SNS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 위원회가 당장 SNS를 취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나, 향후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있어 언론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작업의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